미국의 CCIR 조직에 관한 규정

I. 설립취지

A. 미국 조직(이후 조직이라고약칭)은 CCIR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국무성에 협조하고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a) CCIR 활동에서 미국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모한다.

(b) CCIR 총회와 국제적인 CCIR Study Group들의 회합에 대비하여 정책과 입장에 대해 자문한다.

(c) 국제적인 CCIR Study Grou들에 제출될 기고서를 작성 하거나 검토, 심의 및 조정된 기고서를 국무성에 제출한다.

이 글은 미국무성으로 부터 입수한 미국 CCIR 조직에 관한 규정을 번역 게재하였음.

Ⅱ. 권 한

A. 조직의 존속과 활동은 국제전기통신협약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Nairobi, 1982) 으로부터 유래한 조약의 책무에 의거하여 국무장관에게 부가된 의무의 수행과 연계하여 이 문서에 의해 공익을 위한 것으로 규정된다.

Ⅲ. 타 단체들과의 관계

A. 조직은 관련된 이해를 갖는 미국 및 국제 단체들과 적절하게 연락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Ⅳ. 조 직

A. 조직은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와 Study Group들로 구성된다.

B. 조직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갖게 된다.

(a) 국가위원회의장-국제통신정보정책국(Bureau of InternationaCommunicat-ions and formation Policy)의 국제무선통신과장(Directo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Radio Communications)이 맡음

(b) 2인의 국가위원회 부의장-연방통신위원회(FCC)와 상무성 정보통신청(NTIA)으로부터 각 1인

(c) 각 Study Group의 의장

C. 국가위원회와 Study Group의 회원 자격은 국제전기통신협약에서 정한 CCIR 에의 참가자격과 같게 결정될 것이다. 즉, 정부기관, 인정된 민간운용회사, 과학연구단체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위한 장비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체 조직등이다. 각 참가자는 미국 CCIR 활동에 건설적으로 공헌해 줄 것이 기대된다.

국가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각 Study Group들의 작업에 대해 운영권한을 갖는다. 각 Study Group의 의장과 미국인으로써 국제 CCIR Study Group의 임원들은 국가위원회에서 각 Group을 대표하여 활동한다.

국가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부속 기구나 조직에 대해 통상 1인의 위원만 임명되는 점을 예외로 하면 제한받지 않는다. Study Group 들의 인원수는 제한받지 않는다.

(a) Study Group들의 의장들 제외한 국가위원회의 각 위원은 가입을 희망하는 기구나 조직의 책임 있는 임원에 의한 서면 요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할 것이다.

(b) 각 Study Group의 의장은 필요한 행정 및 제정적 협조가 피임명자(각 SG 장)에게 제공될 것을 보증하는 피임명자가 속한 기구나 조직의 책임 있는 임원에 의해 작성된 서면 약속에 의거하여 국가위원회 의장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c) 국가위원회 위원직은 1) 해당 기구나 조직의 책임있는 임원의 서면요청이나.

2) 미국 혹은 국제 Study Group 의 간부직의 해임에 따른 변화외에는 취소 및 변동될수 없다. (임기가 없음)

(d) Study Group 은 각 부속 기구 및 조직에 대해 선임된 1인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 할 수 있다. Study Group의 구성원은 가입을 희망하는 기구나 조직의 책임 있는 임원에 의해 작성된 서명 요청에 의거, 해당 의장에 의해 임명될 것이다.

D. Study Group 들의 구성은 Study Group 3를 제외하면 국제 CCIR동일하다. (CIR SG3에서 다루어짐) Study Group 1, 2, 4, 5, 6, 7, 8, 9, 10, 11, CMTT, 그리고 CMV에 대한 참고 조항들은 이설립 강령에 첨부되어 있다.

V. 활 동

A. 국가위원회 임원들은 다음의 책임을 갖는다.

(a) 의장은 회합에 대한 의제를 승인할 것이고 모든 회합을 소집, 주제 그리고 정회한다.

(b) 의장은 국가위원회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 Group을 결성시킬수 있다.

(c) 각 부의장은 의장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와 Study Group들의 활동에 대한 책무를 행할 수 있다. 부의장은 의장이 정한 바에 따라, 혹은 예측치 못한 의장의 부재시에 의장 대리직을 수행한다.

B. 각 Study Group의 의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같는다.

(a) 의장이 정부관리일 경우, 의장은 회합의 의제를 승인하고 회합을 소집, 주재 및 정회한다.

(b) 의장이 정부 관리가 아니면, 해당 Study Group의 회합 의제는 국가위원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국가위원회 의장은 해당 정부 관리가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관리는 정회가 공익에 부합되면 어떠한 회합도 정회시킬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그밖의 경우에는, 의장이 모든 회합을 소집, 주재 및 정회한다.

(c) Study Group의 의장은 Study Group의 활동의 편의를 모도하기 위하여 임시 Sub-Group을 결성시킬수 있다.

C. 국가위원회와 Study Group들은 회의를 개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한안이 있으면 해당 의장의 소집에 따라 회합해야 한다. 국제회합 일정과 국가적 활동의 정도에 따라 국제회합기간이 아닌때에 국제회합에 대비하여, 국가위원회는 연간 1-3회 각 Study Group은 연간 1-5회 회합할 수 있다. 국가위원회나 Study Group의 관심을 요하나 회합을 소집할 필요는 없는 실무적 사안은 서신에 의해 처리한다.

D. 회의의 실제 참석자 수를 정족수로 한다. 서신에 의해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족수를 전체 구성원 수로 한다.

E. 국가위원회와 Study Group의 기능은 자문에 국한되며 합의에 의해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국가위원회나 Study Group의 작업 결과로 취해질 조치의 결정은 해당 의장 또는 유급 전임 정부 관리에 의해 내려진다.

F. 국가위원회는 국제무선통신과장(Directo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Radio

Communication)과 운영부국장(Deputy Director for Operations)을 통하여 국제통신정보정책국(Bureau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olicy)의 국장(U.S. Coordinator and Director)에게 보고한다. 각 Study Group은 의장을 통해 국가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한다. 각 Sturdy Group은 의장을 통해 국가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한다.

G. 국가위원회와 Study Group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이 자진하여 자료나 보고서를 제공하면 그 기업의 현재 혹은 계획된 상업 활동에 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접수, 또는 검토할 수 있다.

H. 기록:

(a) 국가위원회와 각 Study Group의 기록은 각각 그 설립과 활동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모든 문서와 서류로 구성된다. 설립 강령, 의제, 상세한 의사록과 회의록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 그 활동과 가입에 관련된 모든 서신 왕래, 토의되었거나 발행될 모든 저작물과 보고서.

(b) 회합의 의사록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회합의 일시와 장소, 참석한 자문위원회 위원과 스탭진 및 기구의 피고용인, 토의된 사안과 도달된 결론의 완전한 요약, 접수되었거나, 발행되었거나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된 모든 보고서의 사본, 회합이 일반 공중에게 개발된 정도의 기술, 구두나 서면 진술한 일반 공중인의 명단을 포함한 공중의 참여도의 설명, 회합에 출석한 공중의 수에 대한 추정.

(c) 각 회합의 의장은 의사록에 정확성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Ⅵ. 재 원

A. 국가위원회 사무국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국제통신정보정책국(Bureau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olicy)의 급여 지

출 및 재원으로부터 지급된다.

B. 각 Study Group 사무국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재원의 조달은 의장이 속한 해당 기구나 조직의 책임이다. 관련 정부 기구는 연방통신위원회, (Study Group 9, 10, 11) 미국 항공우주국(Study Group 2), 해군성(Study Group 5), 상무성(Study Group 1, 6, 7)이다 관련 비정부조직은 Communications Satellite Corporation (Study Group 4), Rock well international(Study Group 8), AT & T(Study Group CMTT),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Study Group CMV)이다.

C. 국가위원회와 Study Group 의 구성원은 그들이 속한 조직의 지출에 의해 직무를 수행한다.

D. GSA에 의해 설정된 회계 지침에 다르면, 국가위원회와 Study Group들에 대한 정부 지출은 연간 8,000.00달러와 0.10 person-years 이다.

Ⅶ. 해 체

A. 14절 (a) (1)의 P.L. 92-463에 의거하여 조직은 공익에 따라 2년을 더 존속하기로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본 설립 강령의 발효일로부터 2년뒤에 해체된다.

Ⅷ. 공중의 위원회 참여

A. 국가위원회와 각 Stu dy Group의 회합은 최소한 회의 소집 15일 전에 연방공람부(Fedral Register)에 고시되어야 한다.

B. 연방공람부의 공고는 회합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토의될 의제들을 명시한다.

C. 회합에 참석을 원하는 일반 공중은 회의장의 수용 한계까지 입장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D. U.S.C. 552b 에 관련하여 국가위원회나 Study Group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

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연방공람부의 공고는 이를 언급하고 의제 예정표를 생략한다.

이제, 이것으로써 이 설립 강령은 금일자로 기록된 것으로 간주되며 사본은 국무성에 대하여 입법권을 갖는 상·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연방자문위원회업의 조항에 따라 국회도서관에 제출되어야 한다.